## □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문 표준안(양식)

### <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문 >

① **(원산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)** 판매자는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원산지표시법") 제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「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」(고시)에서 정하는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.

- **표시대상**: 국산·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중 법령에서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정한 품목(가공품은 법령에서 정한 원료의 원산지)
- **표시방법**: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, 소비자가 구매시점에 원산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 주위 및 상세페이지의 원산지 항목에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.
-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(원산지표시법 제18조)

② **(거짓 표시 등의 금지)** 판매자는 원산지표시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
-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
-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·변경하는 행위
-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,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
-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·제공하는 경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위장하여 조리·판매·제공하는 등 제6조제2항에서 금지하는 행위

③ **(위반 시 제재)** 판매자가 ②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- **형사처벌**: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(병과 가능)(원산표시법 제14조)
- **행정처분**: 표시의 이행·변경·삭제 등 시정명령, 해당 품목의 거래행위 금지 및 위반사실 공표(원산지표시법 제9조)
- **과징금**: 2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한 경우(원산지표시법 제6조의2)

**※ 자세한 사항은**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https://www.naqs.go.kr) 누리집 첫 화면의 **「원산지 표시 관리」**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(https://nfqs.go.kr) 누리집의 **원산지 표시제도 안내**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